

한경훈 / 1월+2월+3월+4월+5월 / 도약GS / 1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48595	21	13	18.5	12.5	65	1	1.92%	6	52
551657	20	13	19.5	12.5	65	1	1.92%	5	
550528	19	13	18.5	12.5	63	3	5.77%	6	
549169	21	13	16	12.5	62.5	4	7.69%	5	
548703	20.5	13	17	11	61.5	5	9.62%	5	
551887	19	13.5	16	11.5	60	6	11.54%	5	
549787	19	12	17.5	11.5	60	6	11.54%	6	
548685	18	12	16	10.5	56.5	8	15.38%	5	
548950	19	11.5	15	11	56.5	8	15.38%	4	
550521	18	12	15.5	11	56.5	8	15.38%	5	
554246	20	11	16	9.5	56.5	8	15.38%	5	
555453	18.5	10.5	17	10.5	56.5	8	15.38%	5	
550531	20	11.5	13	11.5	56	13	25.00%	5	
551986	18	12	15.5	10.5	56	13	25.00%	5	
554121	17	11.5	16	11.5	56	13	25.00%	5	
549891	19	12	16	8	55	16	30.77%	5	
548629	18	12	19	4.5	53.5	17	32.69%	5	
549938	20	13	16.5	4	53.5	17	32.69%	5	
551888	17	11	14.5	11	53.5	17	32.69%	4	
552019	17	12	12.5	11	52.5	20	38.46%	4	
548598	18	10	15	9.5	52.5	20	38.46%	4	
552823	14	11	14	13	52	22	42.31%	5	
551886	16	11.5	15	8.5	51	23	44.23%	5	
555455	16	10	15	10	51	23	44.23%	4	
553004	13	12	16	9.5	50.5	25	48.08%	5	
549206	17	9	13.5	10.5	50	26	50.00%	5	
553213	16	10	15	9	50	26	50.00%	5	
551984	14	13	14	8.5	49.5	28	53.85%	5	
550529	16	8	13.5	10.5	48	29	55.77%	5	
548623	14	10	14.5	9	47.5	30	57.69%	5	
548652	13	12	14	8.5	47.5	30	57.69%	5	
548660	16	7	16	8	47	32	61.54%	5	
551891	15	10	12.5	9.5	47	32	61.54%	4	
553103	18	9	14	6	47	32	61.54%	5	
563231	15	9.5	13.5	9	47	32	61.54%	5	
549071	15	8	14.5	8	45.5	36	69.23%	5	
549761	15	11	12	7.5	45.5	36	69.23%	5	
552323	18	12	15.5	0	45.5	36	69.23%	5	
552434	12	12	13.5	7.5	45	39	75.00%	4	
553290	12	12	14	5	43	40	76.92%	5	
553120	12	10	11	10	43	40	76.92%	5	
552904	12	11	11	8	42	42	80.77%	4	
553179	13	5	14	9	41	43	82.69%	5	
553142	11	8	12.5	9	40.5	44	84.62%	4	
553155	9	10	11.5	9.5	40	45	86.54%	5	
548865	8	7	14.5	8	37.5	46	88.46%	5	
548724	13	5	11.5	6.5	36	47	90.38%	4	
552584	9	7	13	6.5	35.5	48	92.31%	5	
553009	11	8	8.5	4.5	32	49	94.23%	5	
551939	8	5	7.5	9	29.5	50	96.15%	5	
549642	15	10	0	0	25	51	98.08%	5	
550097	6	3	4	5	18	52	100.00%	5	

한경훈/1월/도약GS/1회/1번	채점자
	박수홍

1. 전반적인 총평

안녕하세요. 한경훈 상표법 도약GS 1, 2문 채점을 맡은 박수홍입니다. 우선 추운 날씨에도 GS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월임에도 많은 분께서 문제 배점에 맞추어 분량을 채워주시고 암기의 정밀도도 높아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GS 작성에 분량 조절에 신경 쓰시면서 4문 모두 시간에 맞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문별로 채점하면서 느낀 바를 얘기해보겠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1)의 경우 상표법상 “상표”와 “상품”의 정의에 대해 묻는 약술형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문제에서 묻는 바가 2개인 경우, 답안에서도 두 가지를 분리하여 적어주셔야 합니다. 상표법 조문은 상표에 대해서만 정의를 하고 있고, 상품에 대해서는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판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상표의 정의에 대한 조문과 상품의 정의에 대한 판례를 적어주셨기 때문에 상표의 정의를 나누어 구체적으로 적어주신 분들에게 점수를 더 드렸습니다. 또한 상품에 대한 판례와 함께 관련 판례를 적어주신 분들에게 최고배점을 드렸습니다.

(2) 설문 2

설문 (2)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상표를 사용했는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도 상품과 서비스를 나누어 서술해주셔야 합니다. 서비스의 정의도 상표법 조문에 따로 규정이 없고, 판례가 규정하였기 때문에, 서비스의 정의 판례를 적어주신 분들에게 가산점을 드렸습니다.

해당 문제는 “상품에 대한 사용”은 떡볶이가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기에 인정되지 않고, “서비스에 대한 사용”은 판례가 실시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1)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이를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2)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3)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사용에 포함됩니다.

판례를 그대로 암기하려고 하기보다는 각 케이스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리시면 암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1) 매장의 외부 간판에 우리할배떡볶이를 표시한 행위 2) 접시에 상표를 표시한 행위 3) 이를 매장에서 서빙하여 유통행위한 것이 모두 떡볶이 전문점 운영업에 대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사안 포섭에 해당 케이스를 모두 찾아 판례가 실시한 바에 따라 포섭하고, 해당 행위가 각각 상표법 2호1항11호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한다고 적어주신 분에게 최고배점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사안 포섭을 하실 때 법조문을 함께 병기하거나 해당 행위가 표시, 유통, 광고 행위 중 무엇에 해당되는지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 설문 3

설문(3)은 상표의 사용에 대해 약술하고 사은품에 상표를 1) 표시하여 2) 나누어준 것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상표의 사용 약술의 경우 개정법에서 2조 1항 11호(다)목이 신설됨에 따라 중요도가 높으니 어떤 행위가 각 목에 해당하는지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표의 사용과 상표적 사용을 혼용하여 서술한 답안이 많았는데, 상표의 사용에 대해 물은 경우, 형식적 사용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니 2조 1항 11호, 2조 2항 각호의 행위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또한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 판례의 경우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문제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여서 2조1항11호라목의 광고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안포섭시 원칙적으로 사은품은 상품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목 나목의 표시 유통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라목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별하여 적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2호1항 각 조문과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 판례를 자세히 서술해주신 분, 그리고 표시, 유통행위와 광고행위를 구별하여 사안포섭해주신 분에게 최고배점을 부여하였습니다.

3. 소결

약술형 문제가 많은 회차여서 그런지 분량조절에 실패한 답안이 간혹 있었습니다. 설문(1), (2), (3)에서 묻는 바가 비슷하다 보니 분량조절에 어려움을 느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는 내용을 무작위하게 나열하듯 길게 쓰는 것보다는,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목차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번 문제에서 표시행위, 유통행위, 광고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답안을 작성하신 경우 오답노트에 적고 비슷한 문제가 출제된 경우 유의하며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경훈/1월/도약GS/1회/2번	채점자
	박수홍

1. 전반적인 총평

문제 2번은 문제 1의 상표의 형식적 사용에 물은 것과 달리 상표의 실질적 사용, 즉 상표적 사용이 있었는지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표적 사용의 판단기준을 답안에 실시하였는지, 그리고 판례에 따라 사안포섭을 정밀하게 하였는지에 따라 점수차등을 두었습니다.

설문별 구체적 채점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1)은 디자인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약술하는 문제로 문제가 묻는 바처럼 “대법원 판례”에 입각하여 서술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부분 디자인에 관한 상표의 사용이 침해인 경우와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된 경우 판례를 잘 적어주셨습니다.

하지만 1) “상표권 침해에 있어” 디자인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으므로 상표권자의 권리에 관한 법89조, 상표권 침해에 관한 108조 1항 1호를 서술하며, 상표권 침해에서 말하는 상표로서의 사용은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서” 기술하고, 상표로서의 판단기준을 서술한 경우가

2) 단순히 “상표로서 사용”의 판단기준을 적고 기술한 답안보다 인상이 좋았습니다. 해당 조문을 놓치신 분들은 오답노트에 적고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설문 2

설문(2)는 설문(1)의 상표로서의 사용 판단기준 판례에 따라 목차를 나누어 답안을 작성한 경우 인상이 좋았습니다. 단순히 사안에 줄글로 적는 것보다 상품과의 관계, 상표의 주지 저명성, 표장의 사용태양, 사용자의 의도경위를 나누어 사안포섭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사용자의 의도, 경위가 아니라 상표권자의 의도, 경위라고 적으시거나, 상표의 유사단단 기준을 길게 서술한 답안이 있었는데, 문제가 묻는 바에 따라 상표로서의 사용 판단기준을 숙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설문 3

설문(3)은 설문 (2)와 마찬가지로 완성품과 부품 사이에 경합이 있는 경우 판례를 적어주시고 판례의 판단기준에 따라 사안포섭을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판례의 결론과 반대로 A 상표를 남방셔츠에 대한 출처표시로 작용하여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포섭한 답안도 있었는데, 종이태그에 부착된 상표는 의류의 출처가 아닌 직물의 출처로 사용된다는 판례의 결론을 숙지해주세요.

또한 결론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침해일수도, 침해가 아닐 수도 있다고 모호하게 작성한 경우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판례의 결론에 따라 답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3. 소결

모두 GS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공부하실 때, 판례를 원문 그대로 암기하기보다 문제 상황을 떠올리면서 공부하시면 암기 부담도 줄어듭니다. 시간이 된다면 사례집, 판례집을 활용하셔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례가 어떻게 사안을 포섭하는지 공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기간 감기 걸리지 않게 몸 관리하며 힘내시길 바랍니다!

한경훈/1월/도약GS/1회/3번	채점자
	윤영우

1. 전반적인 총평

자생초 판례에 기반한 문제로, 대부분 정답을 맞춰 주셨습니다. 따라서, 분리관찰과 요부관찰에 대한 법리를 잘 암기해 작성하였는지, 사안 포섭을 풍부하게 하였는지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부여하였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대부분 무난하게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원칙인 전체관찰을 언급한 후에 분리관찰로 넘어간 답안지가 더 읽기에 좋았습니다. 결합상표의 의의 등 답지에 없는 법리여도 문제의 취지에 맞는 경우 점수를 드렸습니다.

(2) 설문 2

요부관찰의 법리가 자주 쓰이는 만큼 다들 판례를 잘 암기하여 작성해 주셨습니다. 사안 포섭 시 갑과 을 상표에서의 요부, 상표 유사 여부를 목차를 나누어 작성한 답안지가 더 가독성이 좋았습니다. 또한, 목차 내에서 사안 포섭이 길어지는 경우 원숫자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설문 3

‘요부관찰과 분리관찰의 관계’ 판례를 설문 1에 적은 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설문 1에서는 ‘분리관찰의 법리’ 를 물어보고, 설문 3에서 비로소 ‘요부관찰과 분리관찰’ 의 관계에 대하여 물어보므로 설문 3에 위 판례를 적는 것이 더 보기 좋았습니다. 문제를 풀이할 때 설문을 모두 읽고 목차를 대략적으로 세운 다음에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소결

중요 판례이고 각 설문에서 묻는 바가 까다롭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누락한 법리나 판례는 기본서에 잘 체크해 두시고, 사안 포섭을 어떻게 하면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한경훈/1월/도약GS/1회/4번	채점자
	윤영우

1. 전반적인 총평

마지막 문제인 만큼 끝까지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답안이 많이 보였습니다. 문제-4에서 적어도 10분은 사용하겠다는 생각으로 앞 문제들에서 시간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무난한 단문 설문으로 대부분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단, 설문에서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많으므로 빠뜨리지 않는 내용이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외관, 호칭, 관념의 판단기준의 경우 Nature' s Friend 판례를 작성하지 않은 답안이 몇몇 있었는데, 판례를 기반으로 한 문제이므로 꼭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답지에 없는 법리라도 타당한 경우 점수를 드렸습니다.

(2) 설문 2

사안 포섭시 목차를 잡지 않은 답안보다는 호칭, 외관, 관념에 대해 각각 목차를 잡고 그에 대한 결론까지 목차 옆에 작성한 답안이 더욱 가독성이 좋았습니다. 영어 상표가 나온 경우, 판례에서도 자주 활용하는 문구인 “국내 영어보급수준”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사안 포섭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설문 3

상표가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린 답안이 몇몇 있었는데, 구체적 거래실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경우 양 상표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넘어가 주세요. 사안 포섭시 키워드인 “구체적 거래실정”을 누락한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일반적 거래실정과 구체적 거래실정은 다른 개념이므로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3. 소결

중요한 판례인 만큼 판례가 활용한 사안 포섭 문구, 흐름 등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판례를 통째로 암기하려 하기보다는 여러 번 읽어보며 판례의 사안 포섭 문구에 익숙해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올해 첫 gs 작성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 21

I. 실문(1) 4

1.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 - 각 조항 1호

(1) 상표법상 상표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을 의미한다.

(2) 표장의 의미 - 각 조항 2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등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지를 의미한다.

2. 상표법상 '상품'의 정의 및 상표법 조항 3호 참조

(1) 상품의 정의 상표법 조항 3호 참조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이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지니고 독립하여 상거래 목적이 되는 물건이다.

(2) 상품의 구성요소(핵심)

상품의 구성요소로는 주형, 교환가치성, 유형성, 유동성, 유체성, 양성이 있고 독립성은 상표법이다.

(3) 서비스의 포함여부 - 주형

각 조항 1호에 따르면, 지적 표장에 해당하는 표장은 제외된 상품의 사용에 그 상품에 서비스도 포함된다.

(4) 경도

상품 상표법상 상품은 그 목적을 살펴본 독립성이

있어 자타상품식별 기능을 하는 대상이 되고, 상품의 범주에는 서비스도 포함한다. Good

II. 실문(2)

1. 상품의 사용의 의미

(1) 상품의 사용 취지

상품의 사용이란, 형식적으로는 각각 1항 1호 각목의 행위를 의미하고, 실질적으로는 자타상품식별 및 출처표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상품의 사용 - 각각 1항 1호 각목

상품의 사용은 각각 1항 1호 각목의 행위를,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는 물품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3

2. 떡볶이에 대한 사용이 '상표'에 대한 사용인지 여부 - 소극

(1) 음식물이 상표법상 상표인지 여부 취지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경우, 유통성과 양산성이 없이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지만, PB 브랜드의 미트를 판매하여 유통성과 양산성이 있는 상품 상표법상 상품이다.

(2) 사안 - 소극

무이 떡볶이를 음식점에서 판매한 경우, 해당 음식은 해당 가게에서만 제공될 뿐 유통성과 양산성이 없다.



따라서 상권법상 상품의 표면을 만족하지 못하여 상품의 사용이 아니다.

3. 특권이 전문점 운영업에 대한 사용인지 여부 - 주권

(1) 서비스의 이미 획득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다.

(2) 서비스에 대한 상품의 사용 획득

서비스에 대한 상품의 사용은 통상 유채물인 상품과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에 ㄱ) 서비스에 제공되는 순차 물건에 상품을 표시하는 행위, 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순차 물건에 상품을 표시하고 전제하는 행위, ㄷ) 서비스 관련 양에 상품을 표시하여 단위 양의 행위를 포함한다.

(3) 사안

1) 특권이 전문점 운영업에 대한 사용인지 여부 - 주권

특리 지정 업인 음식점 운영업은 순차적 이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독립하여 상거래 대상이 되는 영역이다.

2) '서비스'에 대한 '사용'인지 여부 - 주권

① 특권 '특권이 전문점 운영업'에 대하여 매장내에서 식사 할 때 서비스 제공되는 접시에 상품을 표시하여 표시행위, 유통행위 등을 하였고 ② 간판에 자신의 상표인

'우려한배 떡볶이' 등을 표시하여 상행위를 하였다.

4. 상권의 해권 - 서비스에 대한 사용

① 권리 '떡볶이'에 대하여는 상권법상 상품 아니므로 사용도 아니지만 ② '떡볶이 전문점 운영법'에 대하여는 상권법상 서비스 권리 인정으로 각각의 사용도 하였다.

포섭 좋습니다!

Ⅲ. 상권(지)

1. 상권의 사용 - 각 조항

(1) 표시행위 권리 - 각 조항 (가)목

① 표시행위권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품을 표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② 서비스에 관련된 일반 수요자가 상품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내부에 있어 존재조차 안 될 경우 상권법상 표시행위 아니다.

(2) 유통행위 - 각 조항 (나)목

① 유통행위권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품을 표시할 전 양도·인도하거나 간접유통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② 유통행위에 대지된 상품 사용행위를 포함하여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권리의 사용 포함하였다.



(3) 하위 판매상품 직행행위 - 각각 항 1호 (대목)

① 하위 판매상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할 때 자들이 많아
짐에 따라 그 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화
하기 위한 수정으로

② 하위 상품권자가 상품 호 상품 표시 상품권
표시 한 것을 타인이 수입하여 ~~국가~~ ~~상하~~ 하는 행위다.

(4) 광행위 - 각각 항 1호 (대목)

① 상품 관련 상품에 상품을 표시하고 전하거나 널리
인양 행위를 의미하고

② 표시에 의하면 1인발 공중이 속하는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1인발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에 놓여진 경우 널리 인양 행위 성립한다.

(5) 각각 항 2호의 표시행위

1) 각각 항 1호 디

표지의 형상이나 소위 냄새 등의 상품을 표시한 행위
또한 각각 항 1호 각목에 표시에 포함된다.

2) 각각 항 2호 디 - 문자인상 상품 사용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전송되는 정보의 전송 방법으로
표시한 행위를 의미한다.

2. 상표를 내건 행위가 상표의 사용인지 여부 - 주요

(1) 광고매체가 표 문 표의 사용 매체

1) 원칙 - 상표법상 상품 여부

원칙적으로, 무상 배부되어 유통가능성 없을 광 매체가 되는
문물은 그 자체로 교환가치를 가지 증상하여 상거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상표법상 상품이 아닌
이에 대한 사용은 상표법외 사용이다.

나) 예외

예외적으로, 해당 문물에 다른 문자나 도형 등이 표시되어
있어 광매체가 되는 문물의 출처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표법상 상품이고, 이에 대한
사용은 상표법 사용이다.

(2) 사안

1) 특별한 사정 관부 - 주류

근이 나주주류의 사들품에는 "특방 유통비 ~가 선택할
우려한배 특별부" 라는 다른 문자가 표시되어 있어 출처
를 표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상표외 사용 여부 - 주류

이에 따라 해당 문물은 특히 '우려한배특별부' 라는
상표를 각각 항 (보 (리)목)이 표시행위에 해당하긴,
이를 행위주체에 나주주류 단리 인리는 각각 항
(리)목의 광매체 상표한다.

3. 상표의 해결 - 상표 사용 성립



따라서, 행인들이 사들여 대부분은 상표의 사용이다.
대형

[문제-2]

13
5

I. 상표(1)

1. 상표를 침해 디어 - 법108조 항 1호 + 89도

상표권자 보호를 위해, 상표권을 없게 제 3자가 상표권자
와 동인·유사 상표를 동인·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침해가 성립한다.

2. 정제 취재 -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 판 Good

타인과 동인·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아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디자인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판단기준

(1) 순수한 디자인적 · 사용의 경우 취재

타인의 상표와 동인·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순수한 디자인적 사용으로서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

(2) 디자인과 동시에 상표의 사용인 경우 취재

디자인과 상표를 대체적 · 선택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



즉, 디자인이 된 후 있다 항상 : 모양이란 상품의
 본질적 기능이 창작성기능을 수행한다면 상품의
사용이 성립한다.

4. 상품의 해결

- ① 단순한 디자인적 사용의 경우 : 상품의 기능 발휘되지
 않아 상품의 사용에 안착되지 않아 상품 침해
 아니지만
- ② 디자인과 동시에 상품 사용인 경우 상품 기능 발휘
 할려면 침해 성립 환수 있으므로
- ③ 구체적, 개별적 : 시장을 검토하여 침해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II. 상품의 5

1. 상표로서의 사용 판단기준 특징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상품과 지정상품
 의 관계, 사용량, 사용자의 의도, 사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해당 결과가 타당하기 위한 논리

(1) 상품간의 관계

특정 상품 X의 '어류' 등의 상품들이 특정 출처에서
 그 널리 알려져 있고, 어느 무라 동일한 어류에

해당하는 낭방서조에 해당 격자무늬를 사용한다.

(2) 사용태양, 사용경위 고려

근의 낭방서조 격자무늬는 등록번호 X에 비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는 세부적인 차이이며 해당 해당 전체적으로 보아 등록번호 X와 매우 유사하게 사용하여 주된 사용형태가 변한 다르지 않는다.

(3) 甲 상표 X의 주지성

甲의 등록번호 X는 근이 사용하는 낭방서조 등의 무 다른 때에 근리 인용하여 주지성 획득하였다.

(4) 근의 리

근은 무라 중인 상표 판매업자로, X가 甲의 출처로서 사용된 있음을 인정한다 이나 기타 유사한 격자무늬가 사용된 사를 인정하였다.

(5) 종합

근의 리와 사용태양, 사용경위, 甲의 X의 주지성과 甲의 재적 인용을 통해 출처 인정가능성을 인정하는 다양 상황의 관계를 보면, 근이 판매하는 낭방서조에 사용된 격자무늬는 그 디자인이라 동시에 甲의 출처 인정가능성을 수행한다고 보인다. 이때 순차들은 낭방서조를 보고 甲의 출처 인정가능성이 있다, 근의 사용된 상표는 장해 해당한다.

II. 식민(지) 3

1. 농업

근이 Y농방셔츠에 종이 태그를 부착한 경우 2위에
 부착된 식변력 있는 A상품과 종이 태그 농방
 셔츠 중 어느 것에 대한 식변 표지로서 작용하는지
문제된다.

2. 상품간 경합이 있는 경우 특성

상품간 경합이 있는 경우, 상품간의 관계, 사용대상,
 상품 사용자의 지도, 사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상품에 대한 식변표지로서 작용하는지 판정한다.

3. 사실 - 종이 태그에 대한 출처

- ① 잔류한 바다 같이 Y농방셔츠에는 등록상표 X가
 출처표지로서 가능하고 있는 점 ② 해당 식변력 있는
 A상품과 부합되었더라도 이는 종이 태그에 있는
 잘 판 눈에 와서 앞의 징등 고려하여 실 종이
 태그에 대한 출처 표지 가능 우행하다
- ③ 근은 여전히 甲 상품 중요하다.

<판>

포섭·가득성 Good

5. [문제-3]
그 (문제)

1. 결합상품의 의미

결합상품이란 하나의 상품에 두개 이상의 문자 및 도형 등이 결합한 것을 의미한다.

2. 결합상품 유사판권 원칙 - 전체권천 원칙

결합상품은 통상 하나의 완전한 상품인 경우 반복회원으로, 전체권천이 원칙이다.

3. 분리권천의 법리

(1) 종래 분리권천 법리 원칙

종래에는 거래상 분리권천이 자연스럽지 못하리 여겨진 장으로 불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한, 때에 따라 2 증 인부로서 분리하여 권천하였다.

(2) 종래 법리에 대한 비판

① 유사판권시 분리권천 상용으로 인해 유사방식이 도입되어 제3자에게 권리에서 부당하고 ② 인방 수요사들의 인방 리스크 있었다.

(3) 문해를 분리권천 방법 원칙

1) 유사적 거래상징 고려

해당 지정상품 일련 거래계에서 분리권천 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로서 출제 요인 충족은 명백히 미흡수
있는 경우 등의 구체적 거래상황을 고려한다.

2) 연관관계 인정

결합상품 중 독립하여 출제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분리관철 요인이 아닌 원도 없이 2개의
가장 유사판정이 가능하다.

(4) 검토

문제를 분리관철 법리에 따라, 직접한 전체관철 전후
유조하기 위해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I. 판문(2)

1. 목적성 및 연관관계 인정 여부

상품 구성 중 강한 인상 기억, 연상 등을 통해 독립
하여 출제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직접한 전체관철의 전후를 위하여 유사판정시 목적성
인정한다.

2. 연관관계의 직접적 기준 여부

목적에 해당 상품 중 인 구성의 수치, 지명성, 인본수준
이 인식, 상례적인 식별력, 지명상품과의 관계, 결합
정도,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제 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

3. 甲과 乙 상표 액 추출

(1) 甲상표 액 - 자생

① 甲상표 중 한타원은 甲이 지경서비스인 유통방
법을 위하여 가설적 표상에 해당하여 취득력
이 없고

② 甲이 2008년 자생한타원을 개량하여 사용한
기간, 甲이 광고 정도, 국내 유명 인간지에 소개되어
자생 부분이 甲이 출제표로서 널리 인식된 사정을
보면, 甲 상표 중 주입하여 출제표 기준 수행해
본은 1 자생이다.

(2) 乙상표 액 추출 - 자생

1) 甲 상표 중 '자생'의 취득력이 강한 사정 존재

① 1 자생이라는 단어를 한쌍쌍글리디 관계에서 취득력
취득력이 없지 않은 ② 甲이 상표 사용으로 2
년전 취득력이 강화되어 ③ 乙상표 액 추출시
이를 고려한다.

2) 선결 - 본문 '자생'

이때, 甲의 상표 구성 중 1차 본문 한쌍쌍글리디
관계에서 약한 등으로 이 인식되어 상대적 취득력
복속하고 ② 자생이 인식되지만 표 인식되거나 인식되므로
사정이 없어서 ③ 물리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
④ 乙 상표 본문 자생이다.

4. 무라 ㄷ 상표 유사여부 - 작곡

(1) 유사말랑 인방을칙 문제

상표의 유사여부를 상표의 디자인, 한글, 라병은 전체적, 작곡적, 이역적으로 일치하여 인방 순서적 작곡적 인상을 기준으로 출처 동일, 혼동 영계가 있는으로 판정한다.

(2) 사안 - 유사

1) 인방, 초칭 - 증명

무라 ㄷ 상표의 요발 모두 1 자생 인방, 인방 순서는 은 이를 보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산아강', '자신으로 내서 자랑' 등의 라병은 가진 것이므로 모두 1 자생으로 추칭되어 인방, 초칭이 증명하다.

2) 출처 동일, 혼동영계 판부 - 작곡

- ① 이에 무라 ㄷ 상표 디자인의 근사체가 크기, 굵기 등에서 다른 면이 있지만 유사하고, 인방, 한글이 증명하여
- ② 인방 순서들의 작곡적 인상을 기준으로 출처 동일, 혼동 영계 있는으로
- ③ 양 상표 유사하다.

5. 상표의 해전 - 유사

무, ㄷ의 권 요발 (자생)으로, 양 상표 유사하다

① ㄹ상표 권징 중 자생라 '초'는 수변력이 각각
없거나 미약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수변력이
우연은 가릴 수 없다

② 수호자들이 자생초를 안채로서 신청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③ ㄹ상표 중 등록하여 출제된 수호초는
본질 과다 따라서 진체로 판하여 유사판단 한다.

(가) 결론 - 비유사

① 甲의 자생라 ㄹ의 자생초는 자생 부분이 공통
되지만 ② 2등진라 3등진 차이와 초부분의
차이를 외관 및 신청이 다르므로 ④ 양 상표 비유사하다.

3. 불리판정에 따른 유사여부 - 비유사

① 甲 상표는 자생라 '한'으로 불리판정될 수 있지만

② ㄹ상표는 자생초를 안채로서 신청한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③ ㄹ상표는 불리판정 될 가능성이 높아, 진체로서
명확히 출제 의 충동 영향을 리 할 수 있
것으로 보여 ④ 양 상표 비유사하다.

4. 신출의 해적 - 비유사

따라서, 양 상표는 오버랩 하는 불리판정 과를 비유사하다.

(가)



(1) 상품 식별력의 상대성. 유동성 문제

상품의 식별력은 주체가 상품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성이 있고,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유동성이 있다.

(2) 유사말방 시작 기준 문제

상품의 상대성. 유동성의 성격으로 인해 상품 유사도판

기준적이지 않고, 후진상품의 등록여부결정시이고, 권리방위력인성필

및 거점전장분류상관 등은 상대성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사안 - '결정시' 기준

무라 2 상품 유사여부판 무 상품에 대한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시'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4. 외관·호칭·인명의 판단기준

(1) 외관·호칭·인명의 고려방법 문제

양 상품의 외관·호칭·인명 중 일부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하나로 인해 명확히 출처 동일·출동은 되질

수 있다면 양 상품 유사하다.

(2) 하나 유사한 경우 문제

반대로, 나머지 요소들이 유사하더라도, 하나의 동일·

유사성으로 출처 동일·출동 영여 있다면 양상품 유사하다.

(3) 사안

사안의 경우, 무라 2 상품의 외관·호칭·인명을 고려하여

출처 동일·출동 영여 있는지 판단한다.

II. (문 12)

1. 문자상표에 관한 인방적 거래실태

- ① 문자상표는 호칭, 특히 자주 본인이 유사여부가 중요하다
- ② 영문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글 내 인방 수요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기준으로 한다.

2. 양 상표 유사 여부 -극

(1) 문자상표의 호칭 고려

- ① 1개의 상표는 영문자로, 국내 영미문화수준으로 보아 인방 수요자들은 (네이처스 프렌드)로 호칭 할 것이라
- ② 2개의 상표는 (자멸의 변역)로 호칭 한 것임바
- ③ 양 상표의 호칭이 완전히 상이하다.

(2) 종합 고려

- ① 1과 2상표는 영문자라 한글 및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되리키 상이하어 호칭 및 도란이 필연히 다르므로,
- ③ 양 상표의 인방이 식연의 전수등으로 동일하리 하더라도 화장품거래상 인방 수요자들은 이를 식연차별주의인 티미 등인방 인식 한 것이기에
- ④ 1과 2상표 명칭이 출처의 동일, 출동 명어를 타일 수 있음으로 양 상표 배유사바다.

III (문 13)

1. 윤자상품에 관한 구체적 거래실정 취지

윤자 상품의 인허가 보급실정 및 생활수준 향상을
인상 대중에게 이용 증가 등을 고려하면, 요청
특허 양게 되라고 승인하여 이를 고려하여 유사판
해야 한다.

2. 양 상품 유사 여부 - 1점

1) 양 상품의 외관 고려

① 윤자 상품은 영문자 상품이 인연로 배열되어 있는
방식 ② B 상품은 자연어 배열로 한글이 배열된
기호인 것으로 판시되 그 상당면 동그마이 모양 등이
부러워 있어 ② 양 상품의 외관상 현저비 상이하다.

2) 종합 고려

① 전술한 바와 같이 현저비 상이하고 양 상품의
리념이 유사하다 하여도 ② 요청 특허 양게 되라고
결사하는 윤자상품에 관한 구체적 거래실정을
고려하였을 때 인정, 외관이 모두 상이하므로
③ 양 상품은 전체로서 명백히 둘커 소인, 출품은
대립수 있는 비특사 상품이다.

3. 시문서 해권 - 비특사

※ 추가작성의 경우 []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① 서비스 제공을 대신하여
 업무 운영이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업무를 대신한다.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 운영 또는
 업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운영 또는
 업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운영 한다.

암/Good

(2) 사업

1) 서비스 제공 - 고객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운영 또는 업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운영 또는 업무 서비스 제공

“서비스”

2) 서비스 제공 - 고객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운영 또는 업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운영 또는 업무 서비스 제공

“서비스”

“서비스”

3) 사업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운영 또는 업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운영 또는 업무 서비스 제공

4) 서비스 제공 - 고객

4. 비밀 - 영업 비밀

(1) 예

비밀의 대상은 영업 비밀 또는 영업 비밀의 정보로서
영업 비밀의 비밀성을 그 내용 자체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항에 포함된다.

(2) 반례

영업 비밀의 대상은 영업 비밀의 정보 자체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항에 포함된다.

5. 비밀 - 영업 비밀

(1) 예

영업 비밀의 대상은 영업 비밀의 정보 자체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항에 포함된다.

(2) 반례

영업 비밀의 대상은 영업 비밀의 정보 자체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항에 포함된다.

(3) 예

영업 비밀의 대상은 영업 비밀의 정보 자체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항에 포함된다.

6. 비밀 - 영업 비밀

(1) 예



사람이 고안한 발명품이 특허법 제 29조 제 1항에 규정된 발명품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허권이 부여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2) '고안'의 요건에 이의 제척

발명품이 신규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허권이 부여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발명품이 고안된 후에도 이미 공지된 발명품인 경우에는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6. 발명품의 신규성 제척에 관한 사항

(1) 발명품의 신규성 제척

1) 발명품의 신규성

발명품의 신규성은 발명품이 고안된 후에도 이미 공지된 발명품인 경우에는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발명품이 고안된 후에도 이미 공지된 발명품인 경우에는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2) 발명품의 신규성

발명품의 신규성은 발명품이 고안된 후에도 이미 공지된 발명품인 경우에는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발명품이 고안된 후에도 이미 공지된 발명품인 경우에는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2) 신규성



특히 이 경우 권리 침해사실 인정에 관하여도 특허법 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리 침해사실 인정 2 수반요건 중 X의 권리 사용 침해사실 인정은 인정되었다.

3. 특허 권리행사 방법

~~X~~ 특허권자로서 X의 특허권 행사에 관하여 권리 침해사실 인정 2 수반요건 중 X의 권리 사용 침해사실 인정은 인정되었다.

4. 사실 인정 방법

20 X의 특허권 행사에 관한 사실 인정은 인정되었다. 한편, X의 특허권 행사에 관한 사실 인정은 인정되었다. X의 특허권 행사에 관한 사실 인정은 인정되었다.

5. 사실 인정 방법

~~X~~ 20 X의 특허권 행사에 관한 사실 인정은 인정되었다. 한편, X의 특허권 행사에 관한 사실 인정은 인정되었다.

6. 특허권 행사 방법 - 권리행사 방법

특허권 행사에 관한 사실 인정은 인정되었다. 한편, X의 특허권 행사에 관한 사실 인정은 인정되었다.



특허의 사용 제한 사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02/17

5

(특허법 제 27조)

1. 사정특허

(1) 특허권자 또는 권리자

특허권자 또는 권리자가 특허권 또는 권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특허권 또는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다.

2. 특허권 행사 제한 사유

특허권자가 특허권 또는 권리를 행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권리의 행사에 제한이 있다.

3. 기타

특허권자 또는 권리자가 특허권 또는 권리를 행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권리의 행사에 제한이 있다.

4. 특허권 행사 제한 사유 (특허법 제 27조)

(1) 특허권 또는 권리 행사 제한 사유



원래 수직이시 변리사들은 사안이 나오게 되거나
사건이 발생하면 변리사들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이
이들 사안에는 비례적으로 많지 않다

(2) 외국인 - 외국 국적 지주

외국인 지주도 ~~외국인~~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주는
국내에 있는 그 법인체와 마찬가지로 사안이 발생하면
그들 2 변리사의 변리사들이 있을 수 있다

5. 영원

변리사들 변리사 영구적인 영구적인 영구적인 영구적인 영구적인
영구적인 영구적인 영구적인 영구적인 영구적인

7.5
a. 영리
b. 영리

(1)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2)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3)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사실상의 권리 ~~권리~~ 사실상의 권리 아닌 사실상의 권리
이러한 권리관계는 권리(사실상의 권리)와 사실, 즉 사실
이 아닌 권리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는 권리 관계에 따라 다르다

(4) 권리관계의 종류에 따른 구분

재산권, 인신권, 신분권, 사실상의 권리, 권리관계의
구분, 권리관계의 종류, 권리관계의 종류에 따른 구분
등에 따른다

2. 사실상의 권리 - 재산권

(1) 부동산 사실상의 권리 - 재산권

①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사실상의 권리관계에 따라 다르다
이 권리관계는 사실상의 권리관계에 따라 다르다 (재산권)
이러한 권리는 사실상의 권리관계에 따라 다르다
사실상의 권리관계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권리는 사실상의 권리관계에 따라 다르다
사실상의 권리관계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권리는 사실상의 권리관계에 따라 다르다
사실상의 권리관계에 따라 다르다

(2) 부동산 사실상의 권리 - 재산권

①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사실상의 권리관계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권리는 사실상의 권리관계에 따라 다르다
사실상의 권리관계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권리는 사실상의 권리관계에 따라 다르다
사실상의 권리관계에 따라 다르다

작성한 인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이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1. 기록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2. 기록본 기록본 - 기록

(1)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3.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 기록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2) 2. 기록본 기록본 - 기록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기록본



본문 2항의 부호를 부호로 한다.

(4) 2항 - 10항

이 항의 2항의 2항의 부호를 본항의 부호로 하고 본항의 2항의 부호를 본항의 부호로 하고 본항의 부호를 본항의 부호로 하고 본항의 부호를 본항의 부호로 한다.

3. 부호 - 10항

1) 부호 - 10항

이 항의 2항의 부호를 본항의 부호로 하고 본항의 부호를 본항의 부호로 하고 본항의 부호를 본항의 부호로 하고 본항의 부호를 본항의 부호로 한다.

2) 부호 - 10항

이 항의 2항의 부호를 본항의 부호로 하고 본항의 부호를 본항의 부호로 하고 본항의 부호를 본항의 부호로 하고 본항의 부호를 본항의 부호로 한다.

Good

2017

~~부호~~

~~부호 - 4~~

<부호 - 4>

이러한 경우에도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경우에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ii) 권리 행사 가능 여부

이러한 경우에도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iii) 권리 행사

이러한 경우에도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4. 권리 행사

3.5

(1) 권리 행사 가능 여부

(ii) 권리 행사 가능 여부

이러한 경우에도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iii) 권리 행사 가능 여부



이것이 본질적으로 우리 사상에 의해 인정받았으므로
~~이~~ 보충적으로 우리 주장에 반박한다.

2. 권리 범위 - 보충사

(1) 반복, 이동 - 보충사

☞ 본질적으로 권리 범위를 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충사상 본질'이란 반복된 것이며, 이는 2 단계
의 과정의 결과 생기는 것임. 이는 반복 과정과, 이동
을 생기는 것이다.

(2) 반복 - ~~본질~~ 본질

☞ 본질적으로 반복의 범위, 과정의 본질적 반복
2 단계의 반복의 과정의 결과 생기는 것이다.

(3) 반복의 과정 - 보충사

☞ 본질적으로 2 단계의 본질적 반복이므로 그 반복
이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반복" 생기는
바탕 수단의 "반복" 본질적 과정의 결과 생기는
본질적으로 보충사상이다.

~~☞ 반복~~

T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